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. 11. 24 선고 2020가단526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10지분에 관하여 2012. 7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이영남

별지